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손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5987 |
|----------|------|

발의년월일 : 2021. 06. 04.

발의의원 : 이태손 의원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김혜정 의원
배지숙 의원
송영헌 의원
윤기배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전경원 의원

1. 제안이유

-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수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원자폭탄 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 요양생활수당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참조
- 나.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라. 기 타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약칭: 원폭피해자법)제2조”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대구광역시”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 원폭피해자”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로, “손자녀의”를 “손자녀(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로,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지원계획”을 “피해자 등의 지원계획”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각각 “피해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를 “피해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피해자 등”으로, “필요한”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원폭피해자를”을 “피해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폭피해”를 “원자폭탄 피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원폭피해자”를 각각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해자에 대한 수혜 지원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원폭피해자” 를 “제4조의” 로, “수 행하기” 를 “수행하기” 로, “협력체 계” 를 “협력체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의” 를 “제4조의 지원사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 개 |
|--|--|
| 행 | 정 |
| 안 | 안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피해자”란 「<u>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u>」(약칭: <u>원폭피해자법</u>)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u>대구광역시</u>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u>시장</u>은 <u>원폭피해자</u> 및 <u>피해자의 자녀</u> 또는 <u>손자녀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원폭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지원계획</u>(이하 “<u>지원계획</u>”이라 한다)을 <u>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u></p> | <p>제2조(정의) ----- -----.</p> <p>1. ----- 「<u>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u>」 제2조 ----- ----- ----- <u>대구광역시</u>-----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u>대구광역시</u>장(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은 <u>피해자</u> ----- ---- <u>손자녀</u>(이하 “<u>피해자 등</u>”이라 한다)의 ----- <u>피해자 등의 지원계획</u>----- ----- <u>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 -----.</p> <p>1. <u>피해자 등</u> ----- ----- -----</p> |

- 2.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 3.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시책의 홍보
- 4.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지원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5. 그 밖에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원폭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 원폭피해 교육 및 홍보
- 3.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자료 정리
- 4.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 5.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 2. 피해자 등 -----

- 3. 피해자 등 -----

- 4. 피해자 등 -----

- 5. ----- 피해자 등-----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4조(지원사업) -----
-----.

- 1. 피해자 등을 -----

- 2. 원자폭탄 피해 -----
- 3. 피해자 -----

- 4. 피해자 -----
- 5. 피해자 -----
- 6. 피해자에 대한 수혜 지원
-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신 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원
폭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
 인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또는 전
 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
 다.

하는 사업

제4조의2(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
 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 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 제
 4조의 -----
수행하기 -----

 -- 협력체계-----.
 ② ---- 제4조의 지원사업 ----

 --.

(붙임 2)

관 계 법 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생략)

[전문개정 2011. 9. 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5. 4. 20.>]